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6년 6월 12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
(영문명) ARA Korea (REF) Limited
(홈페이지) <https://arakref.co.kr/home/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Two IFC 23층
(전 화) 02-6956-1739

대 표 이 사 : 강동헌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지원본부장
(성 명) 황성희 (전 화) 02-6956-1733

작 성 자 : (직 책) 대리
(성 명) 임채원 (전 화) 02-6956-1739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7-1호)

회사합병 결정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1. 합병방법 | | 에이알에이코리아(주)가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(주)를 흡수합병 1) 존속회사 : 에이알에이코리아(주) 2) 소멸회사 :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(주) | | | |
| - 합병형태 | | 해당사항 없음 | | | |
| 2. 합병목적 | |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| | | |
| 3.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| | 에이알에이코리아(주)는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(주)의 지분 100%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 후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(주) 사업 일체를 승계하게 됨. 본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는 없으며, 본 합병 완료 후 에이알에이코리아(주)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을 변동은 없음. | | | |
| 4. 합병비율 | | 에이알에이코리아(주):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(주) = 1:0 | | | |
| 5. 합병비율 산출근거 | | 존속회사인 에이알에이코리아(주)가 소멸회사인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(주)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,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할 예정임. | | | |
| 6.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| 외부평가 여부 | 미해당 | | | |
| | - 근거 및 사유 | 본 합병은 에이알에이코리아(주)가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(주)와 합병하는 것으로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6조의5 제7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대상이 아님. | | | |
| |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| - | | | |
| | 외부평가 기간 | - | | | |
| | 외부평가 의견 | - | | | |
| 7.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(주) | 보통주식 | - | | | |
| | 기타주식 | - | | | |
| 8. 합병상대회사 | 회사명 | 에이알에이코리아 주식회사 | | | |
| | 주요사업 |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관리회사 | | | |
| | 회사와의 관계 | 모회사 | | | |
| |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(원) | 자산총계 | 63,811,314,382 | 자본금 | 7,000,000,000 |
| | | 부채총계 | 5,916,005,014 | 매출액 | 9,009,865,911 |
| | | 자본총계 | 57,895,309,368 | 당기순이익 | 1,172,015,849 |
| - 외부감사 여부 | 기관명 | | 감사의견 | | |
| 9. 신설합병회사 | 회사명 | 해당사항 없음 (흡수합병) | | | |
| | 설립시 재무내용(원) | 자산총계 | - | 부채총계 | - |
| | | 자본총계 | - | 자본금 | - |
| | | [날짜입력] | - | 현재기준 | |
|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 | - | | |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|
| | 업연도 매출액(원) | | |
| | 주요사업 | | |
| 10. 합병일정 | 합병계약일 | 2026년 6월 12일 | |
| | 주주확정기준일 | - | |
| | 주주명부 폐쇄기간 | 시작일 | - |
| | | 종료일 | - |
| | 합 병 반 대 의 사 통 지 접 수 기간 | 시작일 | - |
| | | 종료일 | - |
| | 주주총회예정일자 | 2026년 6월 26일 | |
| | 주 식 매 수 청 구 권 행 사 기 간 | 시작일 | - |
| | | 종료일 | - |
| | 구주권제출기 간 | 시작일 | - |
| | | 종료일 | - |
| | 매매거래 정 지예정기간 | 시작일 | - |
| | | 종료일 | - |
| | 채 권 자 이 의 제출기간 | 시작일 | - |
| | | 종료일 | - |
| 합병기일 | 2026년 8월 25일 | | |
| 종료보고 총회일 | 2026년 8월 25일 | | |
| 합병등기예정일자 | 2026년 8월 26일 | | |
| 신주권교부예정일 | | | |
| 11.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| 행사요건 | | |
| | 매수예정가격 | | |
| | 행사절차, 방법, 기간, 장소 | | |
| | 지급예정시기, 지급방법 | | |
| |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| | |
| | 계약에 미치는 효력 | | |
| 12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 | 2026년 6월 12일 | |
| - 사외이사참석여부 | 참석(명) | - | |
| | 불참(명) | - | |
| - 감사(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) 참 석여부 | | - | |
| 13.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| | 아니오 | |
| - 계약내용 | | | |
| 14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| | 아니오 | |
| -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|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음. 따라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 모집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,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됨. | | |

| | |
|--|---|
| 15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| |
| - 본 합병은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 방식으로,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모두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할 예정임. 이에 따라 합병 이후 주주구성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임. | |
| - ‘10. 합병일정’은 현재시점에서의 예상 일정이며, 각 당사자의 협의 및 관련 법령 등 기타 제반 사항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| |
| ※ 관련공시 | - |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「상법」 제522조, 제527조의2,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(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·대표집행임원 등의 결정)이 있을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합병방법”은 “A사가 B사를 흡수합병”, “A사와 B사의 신설합병” 등 해당 방법을 기재한다.
- 주3)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예정일자 등 관련 없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.
- 주4) “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”는 합병이 회사의 경영, 재무,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등을 기재한다.
- 주5) “합병비율”은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존속회사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하고,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6) “합병비율 산출근거”에는 비율·가액 등을 산출하는 데 사용한 방법, 주요가정, 산출내용, 기준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(기준주가·자산가치·수익가치 등 포함). 또한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의 단서 미적용 등 비율산출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7) “외부평가에 관한 사항”은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,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“근거 및 사유”만 기재한다. “외부평가 의견”은 적정여부를 기재하되, 평가결과가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근거를 요약해서 기재한다.
- 주8) “회사명”란은 법인의 한글명을 기재 후 ()에 영문명을 추가 기재한다.
- 주9) “회사와의 관계”란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, 계열회사, 기타 등을 기재한다.
- 주10) “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”은 행사요건, 예상가격 등 표에 기재된 주요사항을 기재한다.

- 주11) “풋옵션등 계약체결여부” 및 “계약내용”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·콜옵션·풋백옵션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방, 계약일, 계약내용(대상, 행사가격, 행사기간 등) 등을 기재한다.
- 주12) “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”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3) “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”은 상기 기재사항과 관련한 사항이거나 상기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 중 해당공시와 관련한 이행요건, 부대요건, 제약요건, 옵션사항, 기타 참고사항 등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한다.